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부정사안 제재조치 법적 근거 쟁점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관리기준



1. 스마트공장 사업 및 잔담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법적 근거

(1) 설립 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2)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세부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

급·확산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관리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 스마트공장 사업 부정 사례

- (1)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과 추진단, 전문평가위원회에서 부정한 방법의 사업 수주와 현장과 맞지 않은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없이 방치 등 운영 중단 사례 등이 지적돼 사업 실태를 점검하여 부정사례를 적발함.
- (2) 부정적발 사례 - (1) 도입업체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경감을 조건으로 공급업체가 사업을 수주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보조금법 위반 사례 25건 형사고발

조치, (2) 공급업체가 기술인력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타사 부정인력을 이용해 사업을 수행하는 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을 위반한 111건에 대해 사업비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3)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 후 실제로 시스템이 부실해 미운영되는 사례 다수 적발하여 관리지침을 최종점검 평가를 6개월 간 시스템 사용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함

3. 스마트공장 사업 부정 사안에 대한 제재조치

(1)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내 제재조치위원회에서 부정사안 조사 및 심의

(1)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명의 제재조치 통지

(2) 제시 근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관리지침 제40조, 협약서

(3) 제재조치 내용 사례 - 공급기업, 도입기업, 대표자에 대한 참여제한 3년, 공급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4) 관리지침 제40조(제재 등) ①전담기관,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수행기업, 수행관계자, 전문가 등 사업관계자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일부의 경우 정부지원금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정부지원금 총액 내에서 제재조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액), 사업참여 제한,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항목과 상이한 용도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

4. 사업의 참여 및 과제 수행에 있어 위조 또는 허위사실 기재의 사업계획서, 제출서류등 문서를 제출하여 전담기관 등을 기망한 경우

5. 사업관계자에 부정청탁, 압력 또는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에 참여한 경우

6. 도입기업, 공급기업 등이 사업결과물 미제출, 유지관리의무 불이행, 로그기록 미제출, 존속기한 위반 등 법령,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과 협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7.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전문가 만족도 조사 결과가 최저기준 이하인 경우

8. 참여 전문가 중 상시점검, 민원 등에 따라 불성실 근무가 확인된 경우

9. 사업 추진 시 협약서에 정한 내용과 반하는 내용 또는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의 이면계약(이행각서) 등을 체결한 경우

10. 기업부담금, 징계에 따른 환수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1.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목적, 절차 등을 위반하여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별표 1 제재기준

2. 중징계(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 → 전담기관 조치)

구분	환수여부	환수금액	제재	후속조치
경고 3회 이상	-	-	참여제한 1년	-
<u>사업 성과</u> , <u>결과확인</u> 등 조사 불응	-	-	경고	-
서면·현장점검 시정·보완요구 불응	-	-	경고	-
사업과 무관한 부당요구·지시, 강요	-	-	참여제한 "영구"	관련법
기타 세칙 미준수로 시정조치 필요	○	해당 금액	경고	관련법
완료보고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	-	-	참여제한 1년	
정당한 사유가 없이 포기, 중단	-	-	참여제한 1년	-
제출서류 등의 거짓, 허위, 변조	○	해당 금액	참여제한 "영구"	관련법
승인된 사업계획과 무관한 사업추진	○	해당 금액	참여제한 2년	관련법
<u>특수관계자</u> 거래	○	거래 금액	참여제한 2년	관련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위반	○	해당 금액	참여제한 2년	관련법
<u>보조금의 목적외</u> 사용(횡령, 유용 등)	○	해당 금액	참여제한 "영구"	관련법
기타 중대한 위반사항	○	해당 금액	심의결과에 따름	관련법

※ 직무정지 시 해당기간 수당 등 미지급(필요시 협약해약, 형사고발 등 추가조치)

4. 추진단장의 제재조치 법적 근거 쟁점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재조치 가능

BUT 기촉법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법인) 또는 추진단장에게 제재조치 권한을

위임한 명시적 법적 근거 없음

(2) 추진단장 명의 제재의 기속법상 근거 의문, 제재조치 무효 여부 쟁점

(3) 관리지침에 장관의 제재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 범위 불분명, 관리지침의 법규성

불인정, 내부사무관리지침으로 볼 수 있음

기술법무, 저작권, 영업비밀,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